

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(PLS)란?

- ▶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(Positive List System)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(MRL)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

국내 잔류허용기준 설정 현황

현재 우리나라에는 200여 작물, 460여종 농약에 대해 약 7,000여개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.

- 쌀(190건), 고추(210건), 사과(151건) 등 주요 품목은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많음
- 엽(경)채류 등 소면적 재배작물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은 부족함(직권 등록 필요)

- ▶ PLS제도 1차와 2차로 나누어 시행합니다.

1차(2016년 12월 31일 시행)

-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



견과종실류



땅콩 또는 견과류

| 밤, 호두, 은행, 잣, 땅콩, 아몬드, 피칸, 개암, 도토리 등



유지종실류

| 참깨, 해바라씨, 호박씨, 들깨, 올리브, 면실, 유채씨, 홍화씨 등



음료 및 감미종실류

| 커피원두, 카카오원두, 콜라너트, 과라나 등

과일류



열대과일류

| 바나나, 파인애플, 키위(참다래), 아보카도, 파파야, 대추야자, 망고, 구야바, 코코넛, 리치, 패션푸르트, 두리안, 망고스틴 등

2차(2018년 12월 31일 시행예정)

-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

*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5-78호(2015. 10. 29. 기준)



잔류허용기준 강화(PLS 도입)에 따른 문제점은?

▶ 농약사용기준이 변화됩니다.

전

규제물질 목록화제도(Negative List System)로
규제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가능

후

PLS가 시행되면 허용물질 이외의
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

▶ 잔류농약 검사기준이 강화됩니다.

전

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산물은 현행과
같이 기준 이하만 적합

후

PLS가 시행되면 코덱스,
유사농산물 적용기준이
삭제되고 0.01ppm
이하 적합 기준만 적용

잔류농약 허용기준이 미 설정된 농산물의 경우
현행은 코덱스, 유사농산물 적용기준을 적용

▶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도입 시 적용사례

농약 적용사례

농산물	현행	개정	
콩 	코덱스 기준 적용 코덱스 : 20ppm / 한국 : 미설정	20ppm 적용	0.01ppm 적용
유자 	국내 유사농산물 적용 코덱스 : 미설정 / 한국 : 미설정(감귤 : 0.5ppm)	0.5ppm 적용	0.01ppm 적용
배추 	해당 농약 최저기준 적용 코덱스 : 미설정 / 한국 : 미설정(최저기준 : 0.05ppm)	0.05ppm 적용	0.01ppm 적용

❖ 안전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아 잔류농약이 미량 검출되면 농산물 폐기,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

☆☆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야 합니다!!

1. 잘못된 농약 사용 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.
 - 경험에 의한 농약 선택보다 작물보호제 지침서 준수
 - 다른 사람 추천에 의한 농약도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
2. 농약별 등록된 작목 및 적용대상에만 사용하세요.
3. 사용시기 및 사용횟수를 지켜주세요.